

국내·외대학과의 복수학위에 관한 규정(3-5-19)

최종개정일 : 2017. 4.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0조의 1 국내·외대학과의 복수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복수학위라 함은 건양대학교(이하 “본대학교” 라 한다)와 해당국가가 인정하는 국내·외대학이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상호 대학이 운영하는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 양 대학이 각각 해당 학위를 수여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대학교와 외국대학과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선발되어 양 대학의 동의를 얻은 교류학생에게 적용된다.

제4조 (신청시기 및 절차)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교류를 희망하는 자는 4학기 초(단, 협정 체결 대학이 지정 선발한 학생은 3학기 초)에 신청서를 해당 학과장을 경유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지원자격) ① 본대학교에서 재학생으로 중인 자로 협정대학이 정하는 별도 선발기준에 준한 자

② 전공 및 교양을 포함하여 70학점이상 이수 한 자로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평점 평균이 2.50(C+) 이상인 자(4.50기준). 단, 협정체결대학에서 지정 선발된 학생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7. 4. 13.)

③ 협정체결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관련 자격증 및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제6조 (제출서류) ① 본교 재학생이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국내·외대학에 교류를 희망하는 자는 4학기 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복수학위 신청서 1부.
2. 성적사정서 1부.
3. 지도교수 추천서 1부.
4. 각서 1부.
5. 어학관련 증명서 사본 1부.

② 본교에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교류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복수학위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여권사본 1부.
5.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 학생의 경우)
6. 어학관련 증명서 사본 1부.

제7조 (중도포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를 원하는 자는 학기 종료일 2개월 전에

복수학위중도포기서를 교류대학의 학과장을 경유 총장의 동의를 얻어 원적대학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교류기간 및 연장) ① 교류기간은 2년(4학기)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당 수업일수는 양 대학에서 정한 약정에 따른다.

② 학점의 부족 등으로 교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 예정일 2개월 전에 복수학위 교류연장신청서를 교류대학의 학과장을 경유 총장의 동의를 얻어 원적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휴학 등의 금지) 복수학위를 신청하여 이수하고 있는 자는 교류기간 내에는 휴학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중도포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등록) 복수학위 신청자는 매학기 본교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수교과목 및 학점) 이수교과목은 교류대학의 개설교과목을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이수과목은 양 대학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의 1(학점인정) (조항 신설 2017. 4. 13.)

① 교류대학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기당 최대 17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정학점은 본교 교육과정내에서 교류대학 이수교과목과 내용 상 유사한 교과목으로 인정하며, 해당교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자율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교류학생은 파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류대학 성적증명서를 소속학부(과)장에 제출하여 소속학부(과)장이 사정하고, 국제교육원장의 확인을 받아 학사운영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사운영처는 학점인정신청원을 검토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학점을 인정한다.

제12조 (학위수여) 복수학위 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원적대학에서 요구한 1, 2학년 과정의 영역 및 학점을 이수한자(70학점 이상)
2.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3, 4학년 과정의 영역 및 학점을 이수한자(70학점 이상)
3. 양 대학에서 각각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졸업인증 등의 졸업기준을 통과한 자(개정 2017. 4. 13.)

제13조 (학적부 관리) ① 교류대학 및 본교에 재학 중인 교류학생에 대하여 학적부를 신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기재사항은 본교규정에 의하여 기재하고 이에 따른 제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4조 (복수학위 제한) 다음 각 호의 대학 및 학생은 복수학위를 신청 또는 이수할 수 없다.

1. 보건의료계열 학과
2. 사범대학
3. 편입학자

제15조 (준용) 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대학의 협의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교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05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08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1조의 1(학점인정)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졸업대상학생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